2013년도 제12차

금융통화위원회(정기) 의사록

- 1. 일 자 2013년 6월 27일(목)
- 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- 3.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(총재)

임 승 태 위 원

박 원 식 위 원(부총재)

정 해 방 위 원

정 순 원 위 원

문 우 식 위 원

- 4. 결석위원 하 성 근 위 원
- 5. 참 여 자 성 자 성 가 시 김 준 일 부총재보

강 준 오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

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

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

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

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태 석 공보실장

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

- 6. 회의경과
- 가. 의결안건

<의안 제28호 — 2013년 3/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>

(1) 의장이「한국은행법」제28조 및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8호 — 「2013년 3/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」을 상정하였음.

(2) 위원 토의내용

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노력,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및 부도업체수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,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, 2013년 3/4분기에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 분기와 같이 12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설정 등 총액한도대출 개편의 성과와 해외 위험요인 부각에 따른 금융·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시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 및 대상부문의 탄력적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.

(3) 심의결과

의결문 작성 · 가결

의결사항

2013년 3/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2조원으로 정한다.